

의안번호	제호
의결연월일	2008. 08.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08. 08.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

제안연월일 : 2008. 08.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 수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

- 각호 ⇒ 각 호(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 기타 ⇒ 그 밖의(안 제2조제2항제14호, 제3조제2항제6호)
- 청원등 ⇒ 청원 등(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상위법령에 따라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편 하고자 함

- 토목·건축 ⇒ 시설, 토목·건축사무관 ⇒ 시설사무관(안 제3조관련 별표)

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업무 조정

- 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안 제3조관련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원등”을 “청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렬란 중 “토목·건축”을 “시설”로 하며, 직급란 중 “토목·건축사무관”을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중 위원회명란에 “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무과장) ① (생 략) ② 사무과장은 다음 <u>각호</u>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u>기타</u>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p>	<p>제2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u>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그 밖의</u> -----</p>																																
<p>제3조(전문위원) ① (생 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u>각호</u>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u>청원등</u> 안전에 대한 검토 보고 2. ~ 5. (생 략) 6. <u>기타</u>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p>	<p>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u> ----- --. 1. ----- <u>청원 등</u> ----- ----- 2.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의</u>-----</p>																																
<p>【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원회명</th> <th>직 위</th> <th>직 렬</th> <th>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총무위원회</td> <td>전문위원</td> <td>행정</td> <td>지방행정 사무관</td> </tr> <tr> <td>산업건설 위원회</td> <td>전문위원</td> <td>행정·농업· <u>토목·건축</u></td> <td>지방행정· 농업·<u>토목· 건축</u>사무관</td> </tr> <tr> <td><u>특별위원회</u></td> <td>전문위원</td> <td>행정</td> <td>지방행정 주사</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사무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u>토목·건축</u>	지방행정· 농업· <u>토목· 건축</u> 사무관	<u>특별위원회</u>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주사	<p>【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원회명</th> <th>직 위</th> <th>직 렬</th> <th>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총무위원회</td> <td>전문위원</td> <td>행정</td> <td>지방행정 사무관</td> </tr> <tr> <td>산업건설 위원회</td> <td>전문위원</td> <td>행정·농업· <u>시설</u></td> <td>지방행정· 농업·<u>시설</u> 사무관</td> </tr> <tr> <td><u>의회운영 위원회</u> <u>특별위원회</u></td> <td>전문위원</td> <td>행정</td> <td>지방행정 주사</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사무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u>시설</u>	지방행정· 농업· <u>시설</u> 사무관	<u>의회운영 위원회</u> <u>특별위원회</u>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주사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사무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u>토목·건축</u>	지방행정· 농업· <u>토목· 건축</u> 사무관																														
<u>특별위원회</u>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주사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사무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u>시설</u>	지방행정· 농업· <u>시설</u> 사무관																														
<u>의회운영 위원회</u> <u>특별위원회</u>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주사																														

관 계 법 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3.5.17, 1980.12.22, 1981.6.24,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3.12.31, 2002.12.31, 2005.8.5, 2007.1.5>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과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개정 1981.6.24>)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1.6.24, 1984.12.3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③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30>

[전문개정 1973.5.17]

□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2조 (상임위원회 설치)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신설 2008.5.7.)
2. 총무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06.8.14)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06.8.14)

제 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신설 2008.5.7.)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5.6.20)(개정 2006.8.14)(개정 2007.3.2)(개정 2008.5.7.)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3.10.31)(개정 2005. 5.25)(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개정 2006.8.